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5. 18.(금) / 총 5매(본문2)
담당 부서 도로운영과	담 당 자	·과장 이정기, 사무관 이국원 ·☎ (044) 201-3909, 3917
보 도 일 시	2018년 5월 21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1.(월) 10:00 이후 보도 가능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 진출입로… '보행자 안전' 강화

보행시설물 · 반사경 · 차량진입 억제 말뚝 설치 의무화… 29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drive thru)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작년 11월에 개정된 도로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된 도로법의 시행일인 5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시설물 설치 의무화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② 도로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 예시 >

반사경	차량 출입 경보장치
차량 진입억제 말뚝	고원식 횡단보도

□ 국토부 관계자는 “드리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앞으로도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6년 보행자 교통사고는 49,235건이며, 보도통행 중 사상자는 1,693명(’17, 경찰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이국원 사무관(☎ 044-201-39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도로법 개정배경

□ 도로법 개정배경

< 도로점용물의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치 >

구) 도로법 규정	개 정 규 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 ---------- ---------- ---------- ---------- ---------- ---------- 안전시설 및 안전표지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실정

* 안전표지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부지침)」에 따른 주의표지, 지시표지 등 도로공사구간 교통안전표지를 말함

○ 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대책으로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도록 함

참고2 도로법령 안전시설 규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보행시설물 등 안전시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부령 제223호, '15.7.22)

-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

- **(보행시설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 (규칙 제2조제35호)

- **(도로안전시설)**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등 (규칙 제38조제1항)

○ 물리적 교통억제의 종류 및 효과 비교

구 분	통과교통억제	속도억제	노상주차억제	보행환경개선
과속방지턱	○	◎	-	△
노면요철포장	○	○	-	-
차로폭좁힘(chockers)	○	◎	△	△
지그재그형태 도로(chicane)	○	◎	△	-
소형 회전교차로	○	○	-	-
통행차단	◎	-	-	△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	-	◎	△

주 : ◎ 효과큼 ○ 효과 보통 △ 효과 적음

(출처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p213, 국토교통부, 2012)

참고3 **안전시설의 종류**

□ 보행시설물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2조제35호에 따른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행시설물 설치

□ 도로안전시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38조에 따른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 포함), 장애인 안전시설 등의 시설물

<시선유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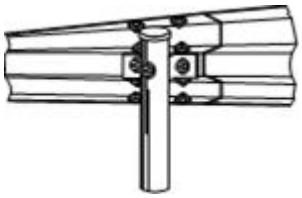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

<노면요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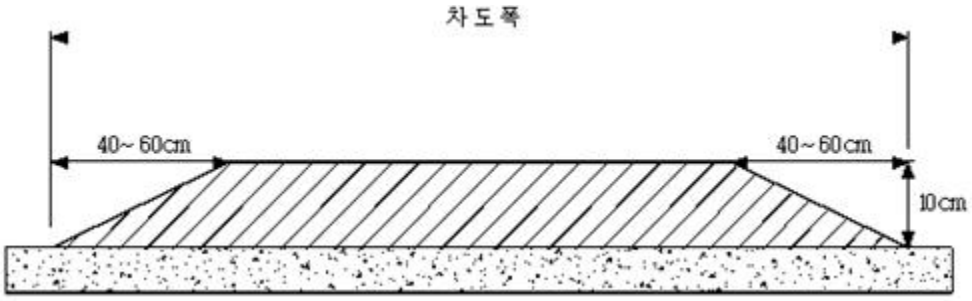

<과속방지턱>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도로안전시설 설치

□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부지침)」에 따른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교통안전표지, 급경사보도 안전시설(미끄럼

방지포장, 안전손잡이, 계단) 등의 **도로·교통 안전시설**

○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자전거신호등), 안전표지(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표지를 말함), 제7에 따른 **도로표지 및 도로부속물**(「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말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차량 속도저감시설(고원식횡단보도, 차도폭좁힘, 과속방지턱), 보행교통섬, 무단횡단 금지시설, 보행자 우선통행 교통신호기, 대중교통안내시설, 보도용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음향안내시설, 영상정보처리기,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점자불록 등의 **보행안전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속도저감시설(고원식 교차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폭좁힘, 과속방지턱,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횡단시설(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섬식 횡단보도), 대중교통 안내시설, 보행자 우선통행 교통신호기, 보도용 방호울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보행안전시설물**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국토부, 2012)」 4-13-2에 따른 속도저감시설(고원식 교차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로폭 좁힘, 요철포장, 과속방지턱), 횡단시설(고원식횡단보도, 보행섬식 횡단보도, 대중교통 안내시설, 보행자 우선통행 교통신호기, 보도용 방호울타리, 자동차 진입억제 말뚝) 등 **교통정온화 시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자동차 진출입에 필요한 **경보장치**

<경보장치>

참고4 안전표지의 종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국토부)

<table>
<tr><td>도로
공사장
전용
주의
표지
(예시)</td><td>

차로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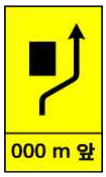

차로 변경(1)

차로 변경(2)

차로 복귀

교대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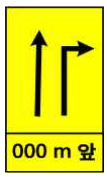

통행차로 지정

단차구간 주의

우회경로 안내

우회도로 종점

공사장 종점

보행자우회 안내

점멸 화살표지

갈매기표지</td></tr>
<tr><td>주의
표지</td><td>

도로폭이
좁아짐(118)

우측차로
없어짐(119)

좌측차로
없어짐(120)

도로공사중
(315)</td></tr>
<tr><td>규제
표지</td><td>

직진금지
(212)

우회전금지
(213)

좌회전금지
(214)

앞지르기금지
(217)

최고속도제한
(224)

서행
(226)</td></tr>
<tr><td>지시
표지</td><td>

양측방통행
(312)

우측면통행
(313)

좌측면통행
(314)</td><td>해제
표지</td><td>

</td></tr>
<tr><td>보조
표지</td><td colspan="2">

추월차로 없음

좌(우)회전후 공사위치

거리안내</td></tr>
</table>